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78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흡연, 대기오염 등 알레르기 질환 악화요인의 증가와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증가하고 있음. 알레르기 질환은 전 생애 동안 지속되어 삶의 질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 나. 이에 서울시민의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3년(2020.1.1. ~ 2022.12.31.)
- 인 력: 센터장1(비상근), 팀장1(상근), 팀원4(상근)
- 소요예산: 390,000천원/연(국비50%, 시비50%)
- 위탁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및 인증지원
 -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

나. 필요성

- 알레르기 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7조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 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질병관리과 직업건강팀 정설희 (☎ 02-2133-7614)